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

국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8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3.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2차 국방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영 의원)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  
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

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수사의 시작·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군인의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가 군 내부 기관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필요성이 생긴 상황임.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해서도 수사·조사자료에 근거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수사 종료 후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관할이 민간수사기관에 이관되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민간수사기관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